《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 반영된 고조선 및 삼국시기 형법관계자료

양 명 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통치수단으로서 국가와 함께 발생하고 발전하여왔습니다. 자본주의에 이르는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력사적으로 보면 해당 국가들은 모두 법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사회 제도를 유지하였다.

우리 나라 고대 및 중세봉건국가들에서도 지배계급은 반인민적인 법을 만들어놓고 그에 기초하여 저들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고 국가통치제도를 유지해왔다.

조선봉건왕조말기에 이르려 1770년에 처음으로 편찬되였던 《동국문헌비고》의 형고를 수정보충하여 1907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인 고조선의 형법관계자료를 비롯하여 삼국시기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형법관계자료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수록되여있다.

여기서는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 반영된 형법관계자료들가운데서 그 일부인 고조선 시기와 삼국시기의 자료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무엇보다먼저 고조선의 형법관계자료가 반영되여있다.

고조선성립이후 노예소유자들은 저들의 요구를 반영한 여러가지 형법들을 제정해놓고 그것을 리용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고조선에서 사형, 배상형, 노비화형 등이 실시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서는 고조선에서 실시된《범금8조》에 대하여 《…8개의 조항을 시행하였는데 남을 죽인자는 죽음으로써 갚게 하고 남에게 부상을 입힌자는 곡식으로써 갚게 하며 남의것을 도적질한자는 물건을 몰수하고 그 집의 노비로 삼도록 하였는데 이것들이 8개 조항중의 3조항이다. 신이 삼가 보건대 이 8개 조항중에서 〈한서〉에 있는 3개의 조항만 보이고 그밖의 5개 조항은 있다고 해도 고증할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륜을 합쳐 8개의 조항으로 된다고도 하지만 아마도 아직 그렇게 되기 전인것 같다.》라고 하였다.

우의 기록을 통하여 고조선에서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였으며 남에게 부상을 입 힌자에게는 배상형이, 도적에게는 노비화형이 적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나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식으로 보상해야 한 다는 조항은 주로 노예소유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것들이라 고 볼수 있다.

이것은 노예주들을 한편으로 하고 평민과 노예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계급사이의 적 대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었던 당대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있다. 그리 고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노비로 전락되는 《도적》은 노예주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 선 착취와 억압의 대상인 근로인민대중이였다. 이처럼 고조선에서는 사형, 배상형, 노비화형 등이 실시되였다.

고조선에서 제정한 모든 법은 철저히 노예소유자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리익에 복 무하는 착취도구로서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다음으로 고구려의 형법관계자료가 반영되여있다.

우선 고구려에서 실시된 여러가지 형벌관계자료들이 서술되여있다.

고구려에서는 최고형벌로서 사형이 실시되였는데 이 형벌은 가장 엄중한 범죄자들에 게 적용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고구려에서 실시된 사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고구려 대무신왕 11년에 임금이 지시하기를 〈10악 대죄중에서 형벌에 준하여 처형되는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죄를 범하여 중장(혹독하게 때리는 장형)을 받게 된자들은 모두속죄값을 받게 하라.〉라고 하였다.》

우의 기록을 통하여 《10악》에 해당한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문헌에는 고구려에서 실시된 사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실시된 사형의 방법에 대하여 여러 문헌들의 자료들을 놓고 분석해보면 고구려에서는 주로 참형과 교형이 실시되었으며 이밖에도 자살형, 화형 등이 실시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 10악-봉건시기 형법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극악한 열가지의 범죄; 반역음모, 큰 역적음모, 반란음모, 흉악한짓, 무도한짓, 공경스럽지 못한짓, 효도스럽지 못한짓, 화목치 못한짓, 의리가 없는짓, 집안안의 추잡한짓이다.

고구려에서는 노비화형이 실시되였다.

노비화형은 범죄자의 신분을 노비로 전환시키는 형벌로서 봉건국가에서 주요형벌의 하나로 실시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서는 고구려에서 실시된 노비화형에 대하여 《북사》에 기록된 자료를 인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죄를 범한것이 있으면 제가평의회에서 의 논하여 엄한자는 죽이고 재산은 몰수하며 처자는 노비로 만든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비화형은 주로 죄인의 가족에게 련좌형으로 실시되였으며 도적질과 같은 경한 죄를 진 범죄자들에게는 독자적인 형벌로 적용되였다.

고구려에서는 장형이 실시되였다.

장형은 고구려에서 실시된 주요형벌의 하나로서 죄를 진자에게 몽둥이로 매를 가하는 형벌이였다. 이에 대하여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무릇 특별한 죄를 범하여 중장을 받 게 된자들은 모두 속죄값을 받게 하라.》라고 기록되여있는데 이 기록을 통하여 고구려에서 는 경한 범죄를 저지른자들에게는 장형이 실시되었으며 장형에 해당한 범죄자들에게는 형 벌의 면제제도가 적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장형은 고구려에서 일반적인 범죄자들에게 가 장 널리 실시되였다.

이처럼 고구려에서 실시된 주요형벌에는 사형, 장형, 노비화형이 있었다.

또한 고구려에서 실시된 여러가지 금지제도에 대한 자료들도 서술되여있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서는 《고구려 동명왕 10년에 일반백성들이 문양이 있는 비단옷을 입는것을 금지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기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구려봉건통치배들은 일반백성들이 비단옷을 입는것마저 금 지하고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저들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밖에도 고구려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봉건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적지 않 은 형법들을 제정해놓고 봉건국가의 반인민적인 통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적극 리용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다음으로 백제의 형법관계자료들이 반영되여있다.

우선 백제에서 실시된 여러가지 형벌관계자료들이 서술되여있다.

백제에서는 고구려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고형벌인 사형이 실시되였는데 이에 대하여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북사〉에서는 〈백제에서는 형벌에 처할 죄과인 반역을 꾀한자와 군사를 퇴각시킨자, 사람을 죽인자는 목을 베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우의 기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백제에서는 반역음모를 꾀하거나 싸움터에서 군사를 퇴각시킨자, 살인자에게는 사형의 한 형태인 참형이 적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백제에서는 이와 함께 금고형이 실시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무릇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적질한자는 3배로 물어주며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금고형은 봉건사회에서 죄과로 하여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형벌의 하나였다. 백제에서는 봉건관리들에 한하여 뢰물행위를 하거나 도적질을 한자들에게는 그 값의 3배를 보상하고 종신토록 벼슬길을 막는 금고형을 적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봉건관료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인민들의 반항을 눅잦히기 위한 기만적조치의 하나로 리용되였다.

백제에서는 이와 함께 류형과 배상형도 실시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도적질을 한자는 류배를 보내되 그 도적질한 물건의 2배를 거두어들인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백제에서는 도적질을 한자에게는 류형이 적용되었으며 배상형 등이 부가형으로 덧붙여 적용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봉건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온갖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도적》으로 묘사하면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우의 기록에서 류배형의 대상으로 된 《도적》은 지배계급의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적수공권의 피압박인민들이였다.

백제에서는 이외에도 집몰수, 노비화형 등도 실시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부녀자들이 간음을 범한 경우에는 남편의 집을 몰수하고 노비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여있다. 이 기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백제에서는 부녀자들이 간음을 범하였을 때에는 그의 집을 몰수하고 신분을 노비로 만드는 형벌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주되는 적용대상은 평민출신의 근로인민대중이였다.

또한 백제에서 실시된 형벌면제제도에 대하여서도 기록되여있다.

문헌에는 《다루왕 6년에 태자를 책봉하고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28년 여름 가물이 들었기때문에 죄수들을 다시 조사해보고 사형수들을 놓아주었다.》라고 기록되여있다.

우의 기록을 보면 백제에서는 죽을 죄를 범한 사람 즉 사형수들도 형벌의 면제가 적

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백제에서는 태자의 책봉과 가물을 비롯한 자연재해 등 여러 계기에 범죄자들에게 형벌의 면제 또는 감형이 적용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이밖에도 백제에서 실시된 여러가지 금지제도에 대한 자료들도 서술되여있다.

그것을 보면 백제 다루왕 2년에 개인들이 저울과 말을 만드는것을 금지하게 하였으며 시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롱간을 부리는자들에게는 죄를 주게 하였다는 자료, 비류왕 5년 에 빚을 진 사람을 관청에 보고하지 않은채 강짜로 재물을 본래의것보다 지나치게 끌어가 는것을 엄격히 금지하게 하였으며 그러한 경우 원래 계약한 량만을 내놓고 주인에게 돌려 주게 하였다는 자료들을 들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 반영된 형벌제도밖에도 백제봉건국가에서는 적지 않은 형벌들이 실시되였는데 그것들은 봉건통치배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봉건국가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다음으로 신라의 형법관계자료들이 반영되여있다.

우선 신라에서 실시된 여러가지 형벌관계자료들이 서술되여있다.

신라에서는 사형의 한 형태인 참형과 교형이 실시되였다.

이에 대하여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서는 《신라 파사왕 즉위년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조사하여 2죄가 아닌것은 모두 용서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신라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의 기본형태인 참형과 교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속한 범죄자들은 절대로 형벌을 면제받을수 없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2죄 - 교형과 참형을 이르는 말

신라에서는 도적, 살인자, 《5역죄》를 범한자 등을 가장 엄중한 범죄자로 인정하고 참형과 교형을 적용하게 하였다. 특히 신라에서도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도적》, 《강도》로 묘사하면서 매우 가혹한 형벌인 참형과 교형을 적용하게 하였다.

문헌에는 《신라 파사왕 3년에 도적무리들이 모여 현과 읍을 쳐서 물건을 빼앗았기때문에 다 죽이였다. 그 형벌이 매우 가혹하였는데 모든 강도들과 살인자들중에서 두목과 추종자들을 모두 목을 베였다.》라고 기록되여있는데 여기서 《도적무리》는 다름아닌 지배계급에게 착취당한 자기들의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투쟁한 인민들이였다.

신라에서는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죽인 죄도 용서받을수 없는 《5역죄》로 인정하고 참형 과 교형을 적용하게 하였으며 절대로 면제해주지 않았다.

> 《5역죄》-다섯가지의 극악한 죄행 또는 그 죄행을 감행한 사람 곧 임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것을 말한다.

또한 신라의 형벌면제제도에 대하여서도 기록하고있다.

《흘해왕(310-356년)때 여름에 크게 가물어서 임금이 직접 죄수들을 재심사하여 돌 봐주었다.》,《…6년(201) 3월에 큰 가물이 들어 죄수들을 조사하여보고 경한 죄는 용서하 였다.》

우의 기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라에서는 자연재해 등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거의 해

마다 형벌의 면제를 실시하였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서는 자연재해를 계기로 실시된 형벌의 면제에 대하여서만 기록하고있지만 신라에서는 왕의 즉위, 시조묘에 대한 제사 등을 통하여 형벌을 면제해 주군 하였다.

또한 신라의 상벌제도의 문란에 대하여 기록하고있다.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진성왕 2년에 아첨하면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자들이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날뛰여 상벌이 공정하지 못하고 뢰물행위가 공공연하게 진행되여 규률과 질서가 문란하여졌다. 이때어떤 무명자(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쓰거나 남을 비방하는 사람)가 시국정책을 비방하는 말을 내돌리자 임금이 사람들을 시켜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누군가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것은 필시 문사로서 뜻을 펴지 못한자가 한짓인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령을 내려 왕거인을 잡아다가 수도에 있는 옥에 가두고 형벌을 가하려고 하였다. 거인이 분격하여 감옥의 벽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우공이 통곡하니 3년이나 가물었고 추연이 슬퍼하니 5월에도 서리가 내리였네 지금 나의 깊은 시름 옛일과 다름없건만 하늘은 말이 없고 푸르고 푸를뿐이다

그날 저녁에 갑자기 번개를 치며 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리자 임금이 두려워 왕거인을 석방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신라에서는 상벌관계가 매우 문란하고 봉건관리들속에서 뢰물행위가 성행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인민들의 반항을 눅잦히기 위한 봉건지배계급의 탄압이 살벌하게 진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신라의 여러가지 금지제도에 대한 자료들도 서술되여있다.

《신라 일성왕 11년에 왕이 령을 내려 민간에서 금, 은, 주, 옥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헌덕왕 7년에 절에서 금과 은, 비단과 수놓은것을 가지고 그릇과 의복을 만드는것을 금 지하였다.》

우의 기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백성들을 차별시하면서 금, 은, 옥과 같은 희귀품들의 사용도 무작정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지위를 올려세우고 백성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증보문헌비고》의 형고에는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의 형법관계자료들이 비교적 종합적으로 서술되여있다.

그러나 문헌에 반영된 여러가지 법관계자료들은 왕권과 봉건통치제도를 유지강화하며 인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것으로 하여 모든 내용들을 철저히 비 판적으로 대하여야 한다.